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정직2년 무효확인판결에 대한 분석 및 비판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판결-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이동환 목사 대리인단

1. 소개

이동환牧사는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행한 뒤 교리와 장정 제3조 제8항 ‘동성애에 찬성하거나 동조한 행위’ 위반으로 2022. 10. 20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 정직 2년 벌칙 판결받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불이익한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판결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에 대한 사법부의 면밀한 판단을 기대하며 2023. 2. 3.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종교재판의 사법심사 대상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소는 이미 정직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소각하 판결 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개신교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행위를 그대로 수용하며 굳이 불필요한 ‘본안에 대한 가정적 판단’ 을 시도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교회 내부 해결 능력이 부재하여 심각한 권리침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외면하며 법적 보호를 포기하고, 교리와 장정의 성소수자 차별 규정이 신도, 목사의 지위 및 권리에 미치는 영향, 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차별에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판결을 하였다.

2.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9. 8. 31.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행하였다.

나.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020. 6. 17.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 원고를 교리와 장정 [1403] 제3조 제8항의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 를 하였다는 범과 사실(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 이라 함)로 기소하였다.

다.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두 차례 재판 기일 진행한 후 2020. 10. 15. 정직 2년의 벌칙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1심 재판’ 이라 함).

라. 원고는 2020. 10. 29. 경기연회 판결에 상소하였고, 총회재판위원회는 2022. 10. 20. 원고의 상소를 기각하며 정직 2년의 벌칙이 그대로 확정(이하 ‘이 사건 정직판결’ 이라 함)되었다.

마. 원고는 2023. 2. 3. 총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함)를 제기하였다.

바. 이후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2023. 6. 7. 다시 원고가 교리와 장정을 재차 위반하였다는 범과사실로 기소하였다.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기소 과정에서 심사위원 제척사유 밝혀져 공소기각 결정 내려졌으나, 원고가 정직2년 징계 이후 다시 동일한 범과를 저질러 엄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심사위원 교체해 재차 원고를 기소하였다.

바. 이에 대해 원고가 상소하였으나 상소심인 총회재판위원회는 2024. 3. 4. 원고의 상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출교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출교판결’이라 함).

3. 판결평석

가. 쟁점- 이 사건 정직판결의 사법심사대상성, 확인의 이익 여부, 절차적 하자 존부

원고는 이 사건 정직판결에 따라 정직 2년이 도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22. 11. 16. 이미 추가 고발이 가능한 권면서를 받은 상황으로 이 사건 정직판결을 근거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정직판결에 따른 벌칙 전력으로 감리교 내 조직 운영을 위한 자리에 임명될 수 없는 결격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고,

이 사건 처벌규정은 감리교의 교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법심사 대상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정직판결은 부적법한 고발에 의한 기소, 이 사건 1심 재판의 절차적 하자(공개재판받을 권리 침해, 기록열람등사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이 사건 정직판결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기록열람등사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무기대등의 원칙 위반)를 주장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 1) 이 사건 정직판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상당 부분이 피고 교리의 해석에 나아가지 않고도 판단이 가능하므로 전적으로 피고 교리의 해석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는 없으나,
- 2) 다른 한편 교인인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지 않아 예외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원고의 법적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유효 적절하고 직접적인 권리구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 3) 가사, 이 사건 소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판결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판결의 의미 및 한계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인정과 정직기간 만료에 대한 기계적 판단

확인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무효확인 소는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참조).

정직기간 도과로 인해 확인의 이익이 문제된 다수의 하급심 판례에서, 정직처분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출근이 정지되며, 동일 직급에서 정직 조치를 받은 후 다시 정직처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 파면이 과해질 수 있고, 집행 종료 후에도 7년간 징계처분 기록이 보존되는 인사상 불이익이 남는 경우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시정할 방법이 없는 경우, 당사자가 소송을 통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원은 교리와 장정 [246] 제46조에 따라 개체교회 담임자는 교회 행정 전반의 책임자로서 개체교회의 대표권 및 재산관리권을 가지고, 이는 국민으로서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정직판결에 따른 2년의 정직기간이 이 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된 2020. 10. 15.부터 기산되어 2022. 10. 15.자로 만료되어 현재(이 사건 소가 진행 중인 시점)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기계적으로 이해하였다.

법원은 교리와 장정 [1403] 제3조 8항 위반의 경우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므로, 원고 역시 이 사건 정직판결에 따른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고발되는 경우 출교에 이를 수 있고(실제 이 사건 출교 판결), 이 사건 정직판결 직후 2022. 11. 16. 추가 권면서를 받은 상태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소 진행 중인 2023. 6. 7. 기소되었고, 교리와 장정 [1421] 제21조 3항 기소된 경우 직임 정지되어 사실상 직무를 이행할 수 없으며, 정직처분으로 임면권에 불이익이 남는 경우, 사법부의 판단 외에 시정할 방법이 없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법원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겪고 있는 권리침해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원고가 생계의 어려움을 입증하기 위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했어야 한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하였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정직판결이 이후 이 사건 출교판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끝까지 외면하고자 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정직판결과 이 사건 출교판결은 각 별개의 범과사실 또는 새로운 범과사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이 사건 정직판결은 이 사건 출교판결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출교판결의 범과사실만을 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였더라도 출교판결을 내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애써 이 사건 정직판결과 이 사건 출교판결을 분리하여 판단하고자 하였다.

부적법한 고발에 의한 기소, 답이 정해져 있는 종교재판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어느 정도 여야 하는 것일까?

법원은 개신교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관점을 그대로 수용하며 굳이 불필요한 ‘분안에 대한 가정적 판단’을 시도하였므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떨어지나,

여전히 부적법한 고발에 의한 기소, 이 사건 1심 판결, 이 사건 정직판결에 이르기까지 종교재판의 불합리한 절차 진행을 상기하고자 한다.

법원은 이 사건 정직판결이 부적법한 고발에 의한 기소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교리와 장정 [1409] 제9조 2항이 고발한정주의를 선언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고발권자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 또한 존재할 수 없어 누구로부터든 고발이 있기만 하면 그 기소가 부적법하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헌법상, 형사법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라는 원칙상 위 조항의 해석을 가급적 이 사건 정직판결의 원고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였어야 한다. 관련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2014. 5. 9. 선고 2014총특선01 판결은 “교리와 장정은 일반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고발남발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사나 장로에게는 특정한 범과에 대해서만 고발권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며 “고발 대상이 아닌 범과에 의해 고발이 이루어지고 이에 근거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다. 감리교 판결을 통해서도 해석상 이 사건 처벌규정이 고발 대상이 아닌 범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법원은 굳이 ‘피해자가 존재할 수 없어 고발이 있거나 하면 기소가 부적법해지는 결과’ 라고 하며 입법적으로 미비한 해당 규정의 적용가능성까지 앞서 걱정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종교재판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종교재판에 해당하는 총회 재판위원회 재판은 국가의 형사소송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형사소송법상 절차적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정직판결은 권징재판으로 해당 벌칙은 형벌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처분에 이르는 절차는 일반인 누구나 납득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총회재판은 2021. 2. 22. 첫 기일 이후 계속되는 절차적 하자(제척사유 발견, 서기 불출석, 기소권자 불출석, 심사위원회 불출석, 재판위 구성에 문제제기 등)로 인하여 과행을 반복하였다. 총회재판위원회는 원고의 정직 기간 2년 내내 재판을 진행하였고, 해당 기간이 만료한 2022. 10. 20 에서야 판결 선고하였다. 부적법한 고발에 의한 기소부터 정직기간이 모두 도과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정직판결이 나오기까지 원고의 직임 정지는 지속되었다. 비상적인 절차 진행과 이미 답을 정한 재판위원회의 태도에 원고는 총회재판에서 도저히 정직 처분 이외의 결과를 기대할 수 조차 없었다. 법원은 이를 ‘일부 부적절한 재판 진행으로 원고의 권리 일부를 제한하였다고 인정되나,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절차 위반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고 하였다. 이보다 더 심하면 그건 재판이 아니지 않을까. 무엇보다, 2년 동안 질질 끈 이 사건 정직판결로 인해 이동환 목사의 정직 기간 2년은 도과해버렸다. 법원은 이와 같은 절차 지연이 합법적이라고 하면서도, 막상 본 판결에서는 정직 기간 2년이 도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교회가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키고 이로 인해 징계자의 정직 기간이 도과한다면, 이는 교회 재판에 의해서도, 사회 재판에 의해서도 구제 받지 못하게 된다. 결국 본 판결은 징계자가 다룰 수 있는 방법 자체를 봉쇄시키는 모순에 도달한다.

소극적이고도 ‘성소수자 차별에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판결

법원은 이 사건 정직판결의 실제적 당부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포기 하였다. 법원은 각하 판단의 말미에 ‘원고가 이 사건 출교판결 무효확인 소 역시 제기한 상황이므로, 이 사건 정직판결의 당부 판단의 필요성은 낮아진다’ 고 설시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정직판결의 정직기간 2년이 이미 만료하였으므로 현재 권리 침해 상황이 없다는 기계적 판단, 각 범과사실이 다르므로 이 사건 정직판결은 이 사건 출교판결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형식적 이해,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종교재판을 열심히 옹호하며 ‘개신교사회가 성소수자들의 수면 위 진출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집단 중 하나라는 것 또한 엄연한’ 이라 스스로 언급한 현실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였다.

“동성애에 찬성하거나 동조한 행위” 에 대한 법원의 자의적 해석에 내제된 차별

법원은 “ ‘규정된 동성애에 찬성하거나 동조한 행위’ 는 ‘이성애가 아닌 동성애에 대한 성적지향이 옳다고 판단하여 수궁하거나 이에 따르는 행위’ 라고 충분히 해석 가능하다.” 고 판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수범자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따라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벌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적지향성은 누군가 옳다고 판단하거나 수궁하거나, 따를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성적지향이란 연애감정 또는 성적감정의 대상이 되는 성별에 대한 지향¹⁾을 말하는데, 이는 개인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의미한다. 우리는 어떠한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가치판단을 하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본질적 정체성 - 인종, 국적, 성별, 성적지향, 장애, 종교 등 - 에 대해서는 옳거나 그르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당신이 여성임을 찬성합니다.” 라는 말이 어색한 것처럼 말이다.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반대는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유달리 ‘동성애에 대한 성적지향’ 에 대해서는 찬성과 동조가 가능한 개념이라고 판단하였다. 동성애는 이성애와 다르다는 차별적 관점이 내제되어 있기에 가능한 판단이다.

또한 이 사건 처벌 규정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만드는 불명확한 규정이다. ‘찬성’ 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어떤 행동이나 견해, 제안 따위가 옳거나 좋다고 판단하여 수궁함’ 이라는 의미로서,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것이 ‘동성애 행위’ 등을 제안받은 것에 대하여 응함을 뜻하는 것인지, ‘동성애자’ 개인이나 집단의 특정 행동에 대하여 수궁함을 뜻하는 것인지, 단순히 내면의 판단만으로도 충분한 것인지, 그게 아니라 외부에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형태로 찬성 의사를 표현하여야 하는 것인지조차 알기 어렵다. ‘동조’ 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남의 주

1) 「성적지향 및 성적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법률」, 일본, 2023. 6. 23. 시행

장에 자기의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보조를 맞추다’ 라는 의미로서, 이것이 ‘동성애’ 행위인 성관계나 스킨쉽 등을 함께 함을 뜻하는 것인지, ‘동성애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의견을 내는 경우를 뜻하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동성애적 행위를 제안하거나 동성애적 생활양식을 심어주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소극적으로 내면의 의사로서 동성애적 행위에 보조를 맞추기를 희망하는 정도로도 충분한지 역시 알 수 없다.

만약 이 사건 처벌규정에 나열한 경우를 모두 처벌하게 되면 그 처벌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며, 그 중 일정한 경우에만 처벌하게 된다면 어느 경우가 정확히 그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이처럼 이 사건 장정규정은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없는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함에도, 법원은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

동성애 반대는 교리에 관한 해석인가?

법원은 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인해 원고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충돌되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벌규정이 교리와 장정 ‘제1편 역사와 교리’가 아닌 ‘재판편’에 속해 있는데, 해당 편에 기재된 범과들은 교리적 문제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처벌규정이 재판편에 수록되어 있지만, 재판편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를 1) 사회법상 범죄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2)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교인간 결속을 저해하는 행위, 3) 교리에 반하는 행위로 분류하며, 이 사건 처벌규정은 3)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법원은 3) 교리에 반하는 행위의 예시로 ‘이단 종파에 찬동·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음주, 흡연의 행위를 하였을 때’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음주, 흡연의 경우는 기독교의 교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행위이다²⁾. 이단 종파에 대한 찬동·협조, 집회 참석의 경우, 이단 신앙을 가졌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참석 자체를 처벌하는 바, 교인간 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신자의 구원이며, 구원이란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써 죄의 용

2) 기독교인이 술에 취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성경구절이 있기는 하지만(엡 5:18, 고전6:12), 음주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 성경에는 예수가 술을 마시는 장면이 다수 기재되어 있으며, 예수의 첫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다. 담배는 성경에 기재된 바가 전혀 없다.

서를 받는 것이다. 보수 기독교인들의 소위 ‘동성애 반대’는 교리와 관련이 없는 이들의 정치적 의견으로 보아야 한다³⁾. 동성애 차별에 앞장서는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동성애는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했다고 주장하지만, ‘가증한 것’에는 의식적으로 부정한 동물을 먹는 것(신 14:3), 흠있는 제물(신 17:1), 마술(신 18:9-14), 부정직한 거래(신 25:13-16), 제의적 매음(왕상 14:23 이하)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들 중 다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받아들이면서, 동성애는 선택적으로 현재까지 금지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성경 해석에 동의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있고, 동성애가 기독교적으로 죄인지 여부는 아직 신학적으로 논쟁 중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이를 전체 기독교인들이 ‘교리’로 인정하여 이 사건 차별 규정을 만들었다고 판단한 바, 이는 심각한 사실오인이다.

종교의 이름으로 타인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을 용인해야 하는가?

법원은 “피고 내부의 민주적 합의를 거쳐 제정된 이 사건 차별규정이 유독 원고 주장과 같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배제를 재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동성애를 찬성·지지하는 행위는 피고 교리에 반한다는 것임이 피고 교인들의 집합적 의사표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는 행위와 이들의 성향에 찬성·동조하는 행위가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축복식 집례는 이들에 대한 찬성·동조로써 이들을 격려하고 고무시키고자 하는 복합적인 행위라고 평가함이 타당한 점, 이 사건 문화축제 현장에 있었거나 이 사건 축복식 집례 사실을 접한 성소수자들 또한 그들과 대립관계에 있다고만 생각한 종교인들 중 하나인 원고 등이 자신들의 성적 지향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축복식을 집례하였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지지감과 위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또한 이를 위해 이 사건 축복식 집례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별규정이 유효·타당한지에 관한 피고 교리의 해석 및 가치판단은 차치하더라도, 이 사건 축복식 집례사실이 동성애에 대한 찬성·동조행위에 객관적으로 포섭됨은 분명하다.” 고 판시하였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동성애를 찬성·동조 하는 행위에는 이동환 목사가 행한 축복식과 같이 동성애자들을 지지하고 축복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축복기도는 종교적으로는 복을 내리는 주체인 하나님의 복이 인간에게 내리길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목사의 직무상 일상행위이자 권한이고 의무이다. 모든 감리교 예배는 ‘축도’, 즉 축복 기도로 마무리 된다. 목사들은 비신자들과도, 교도소 수감자들과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축복한다. 유독 동성애자들에게만 축복을 금지하는 것은,

3) 기독교계의 동성애에 대한 논쟁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운동이 활성화 되면서 점화되었다.

교역자에게 자신의 양심을 위반하여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에 동참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피고 소속 교인이 동성애자들의 존재를 인정(수공)하고 지지하고 축복하면 출교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이 사건 차별 규정이다. 법원은 이 사건 차별 규정이 교리의 일부라고 보았다. 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이 사건 차별 규정은 동성애를 부정해야 기독교인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선언으로 반대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선언이 어떻게 혐오·차별·배제의 재생산에 해당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건 차별 규정이 현행 법과 위반되는 지점이 있다면, 당연히 법원은 이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정의하면서 차별사유의 하나로 ‘성적 지향’을 명시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별규정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4. 결 론

법원의 판단은 소의 이익, 여러 절차적 하자, 실체적 하자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특히 본안에 대한 가정적 판단 중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피고의 교리라고 볼 수 있는지, 원고의 행위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조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충분히 논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종교단체의 징계처분이 개인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 현대 사회의 가치관 변화, 미래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사건을 판단했어야 하지만 이 역시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이에 대해 면밀하게 판단되길 바라본다.